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3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선민 · 신장식 · 백선희
차규근 · 서왕진 · 강경숙
이해민 · 황운하 · 김재원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의 구조 및 시설(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